

[사건명] 행심 2013-16

중학교 서술형 시험문제 채점 정답 정정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5. 청구인에게 한 중학교 국어 서술형 시험문제의 부분점수를 취소하고 정답으로 정정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재결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청구인은 인천 소재 ○○중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나. 2013. 7. 8. 피청구인의 2학년 6~9반 담당교사 △△△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2회 고사 서술형 채점을 2013. 7. 12. 끝낸 후 학생들에게 확인 서명을 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의 국어 서술형 1번 답에 대한 점수로 5점(만점)을 부여하였다.
- 다. 2013. 7. 15. △△△가 2학년 1~5반 담당교사 ●●●과의 채점 교차확인 과정에서 상호 협의 후 청구인의 국어 서술형 1번 답인 ‘당사자가 아닌 권력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을 풍자한다’에 대하여 2점 감점하여 부분점수 3점을 부여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3. 7. 15. 국어 서술형 1번의 3점 부분점수 채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마. 이에 2013. 7. 16. 국어교사 6명으로 구성된 2회고사 2학년 서술형 1번 채점 기준에 대한 교과협의회가 개최되어 위 서술형 1번 문제에 대하여 부분점수 3점을 인정하기로 하는 채점기준이 결정됨으로써 청구인의 국어 최종 점수는 98점이 되었다.
- 바. 2013. 7. 16. 개최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위 교과협의회의 결정대로 부분 점수 기준을 명시한 채점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서술형 1번 문제에 부분점수 3점을 부여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채점행위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어 서술형 1번 문제의 답안을 정상 채점한 것을 번복하여 부분채점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를 하였기에 피청구인의 결정에 신뢰성이 없다.
- 나. 피청구인은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이의 신청한 2013. 7. 15. 바로 다음날 전교 석차와 함께 성적표를 바로 배부 한 것으로 보아, 성적산정은 성적처리 이의 신청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 된 것이다. 또한 성적 이의신청을 하려간 청구인에게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해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한 피청구인을 징계처리 해야 마땅하다.
- 다. 선배교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 후배교사(△△△)가 채점기준을 선배교사에게 맞추었으며, 국어과 교사들이 참석한 교과협의회 및 교과부장교사들이 참석한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토론으

로 같은 결론에 도출된 것은 ○○○ 교사가 교과부장으로 영향력이 있었으므로 채점기준을 신뢰하지 못한다.

라. 청구인의 답인 “사람보다 권력에 고개 숙인다”를 부분정답으로 채점한 것과 “사람보다 권력에 아부한다.”라고 적은 답안을 만점으로 채점한 것을 비교해 볼 때 ‘고개를 숙인다’와 ‘아부한다’를 다르게 평가한 채점기준은 형평에 맞지 않아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술형 평가에서 학생들의 답을 완벽하게 채점하는 것은 어려우며 정확하고 완벽한 서술형 채점을 위해 <출제> → 채점기준 협의 1 → <가채점> → <담당학급 채점> → 협의2 → <재채점> → 협의3 → <교차채점> → 협의4 → <최종채점 및 확인>의 과정을 거친다. 이번 사건의 문제에 대한 협의는 협의4에서 발견한 채점의 오류이며, 서술형 답안에 대한 학생의 확인 싸인은 OMR답안지의 확인 과정에서 정답풀이 후 받은 것이어서 재점검 후 점수가 일부 바뀔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나. 2013학년도 1학기 2회고사 실시 계획에 다음과 같이 시험 일정이 예정되었다.

주 요 업 무	일 시	담 당 자
성적 이의신청 처리	7.15	교무기획부 성적계, 교과 담당교사
나이스 작업 및 과목별, 학급별 성적확인	7.16	교무기획부 성적계, 교과 담당교사
성적표 결재	7.18	담임교사
성적표 발송	7.19	담임교사
성적일람표 제출	7.19	교과별(교과 담당교사), 학급별(담임교사) →교무기획부 성적계

채점 직후부터 2013. 7. 15.까지 공식적인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었으며 학부모에게 별도의 성적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고지나 안내문이 발송 되지 않았으나, 월중행사계획표에 명기하여 학교게시판에 게시하며 각 학급 및 교과에서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3. 7. 16. 성적표가 배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당시 학급별 성적 확인 단계로 교과의 성적이 나온 것을 개인별로 확인하도록 학급의 성적 일람표를 잘라서 개별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절차에 맞는 객관적이고 차분한 응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불성실하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없다, 불친절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라. 선배교사의 행정편의를 위해 채점 기준을 선배교사에게 맞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며, 국어과 교사들이 참석한 교과협의회 및 교과부장교사들이 참석한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토론으로 이 사건 처리 기준에 대한 결정이 적절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배교사 ○○○은 국어과 교과 부장도 아니고 학교성적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의 선배교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마. 채점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1) 문항의 오류가 없는 이상, 서술형 채점기준은 교과 담당 교사의 권한이므로 동학년 동교과 교사들 간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로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채점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합의 후 다양하게 기술된 학생들의 서술형 답안 채점 중에 발생한 것으로 상호 교차확인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 것이며 성적 처리 과정상에서의 오류는 없었다.
- 2) 국어 서술형1 평가 문제의 채점기준은 “사람보다 사람의 지위 (신분/ 사회적 위치/ 관직/ 자리)를 더 존경(존중/ 숭상/ 중

시)하는 풍토(현상/ 태도/ 모습)를 풍자(비판/ 조롱/ 폭로/ 비난)하고 있다.”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의 의미를 포함하는 다양한 표현을 일단 정답으로 인정한 것이다.

- 3) 단, ① 사람보다 (사람의 인격보다) ② 사람의 지위(권위, 관직, 자리, 직위, 신분 등) ③ 존경, 존중, 숭상, 중시, 중요시 등으로, 이 중 한 가지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으면 완벽한 의미의 답안 서술이라 볼 수 없기에 부분점수 3점을 주기로 협의하였다.
- 4) 청구인의 답은 “당사자가 아닌 권력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을 풍자한다.”로 이 답안을 부분점수 3점 처리한 이유는 ‘고개를 숙이다’라는 표현이 ③번 요소와 의미는 상통하나, 만평 자체의 현상 위주로 서술한 것이며 다소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 5) 만약 이것을 정답 처리할 경우, ‘고개를 숙이다’와 비슷한 ‘머리를 숙이다, 허리를 굽힌다, 굽신거린다, 인사를 한다’ 등의 유사한 다른 답안도 정답 처리해야 하지만 이는 그림의 사람들 모습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써 그림이 풍자하는 속뜻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해 감점 처리하였다.
- 6) ‘아부하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 랑거리다.”라는 뜻을 명확히 가진 서술어이고, 국어과의 평가 항목이니 만큼 정확하게 표현해 내는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채점기준에 이러한 요소를 늘 반영하였고 학생들에게도 강조하여 지도 하였으므로, 채점기준에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채점행위의 처분성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 2) 피청구인이 학생의 성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채점을 실시한 후 이루어지는 최종 성적산정과 이에 근거한 등급의 부여라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구합 2161).
- 3) 이 사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최초 채점행위 및 그 후 성적 평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채점 기준과 채점 방식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리는 최종 단계인 성적 산정과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적 과정에 있는 선행적인 중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고, 그 단계에서는 아직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점행위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에 대하여

- 1)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구술심리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피청구인의 성적산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 2)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이 사건의 경우 가사 청구인의 국어 서술형 1번 문제의 답안에 부분점수 3점을 부여한 이 사건 채점행위가 위법하여 전체점수 5점을 부여하여 청구인의 국어 2회 고사 성적이 98점에서 100점으로 변동되더라도 1학기말 합산 성적에서 동일하게 A등급이 되므로 성적산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성적산정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어

그렇다면 이 사건 채점행위의 취소와 성적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